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47
----------	-------

발의연월일 : 2018. 10. 23.

발 의 자 : 박용진 · 강병원 · 강창일
강훈식 · 고용진 · 권미혁
권칠승 · 금태섭 · 기동민
김경협 · 김두관 · 김민기
김병관 · 김병기 · 김병욱
김부겸 · 김상희 · 김성수
김성환 · 김영주 · 김영진
김영춘 · 김영호 · 김정우
김정호 · 김종민 · 김진표
김철민 · 김태년 · 김한정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맹성규 · 민병두 · 민홍철
박경미 · 박광온 · 박범계
박병석 · 박영선 · 박완주
박재호 · 박 정 · 박주민
박찬대 · 박홍근 · 백재현
백혜련 · 변재일 · 서삼석
서영교 · 서형수 · 설 훈
소병훈 · 손혜원 · 송갑석
송기헌 · 송영길 · 송옥주
신경민 · 신동근 · 신창현

심기준 · 심재권 · 안규백
안민석 · 안호영 · 어기구
오영훈 · 오제세 · 우상호
우원식 · 원혜영 · 위성곤
유동수 · 유승희 · 유은혜
윤관석 · 윤일규 · 윤준호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이규희 · 이상민 · 이상헌
이석현 · 이수혁 · 이용득
이원욱 · 이인영 · 이재정
이종걸 · 이철희 · 이춘석
이학영 · 이해찬 · 이후삼
이 훈 · 인재근 · 임종성
전재수 · 전해철 · 전현희
전혜숙 · 정성호 · 정세균
정재호 · 정춘숙 · 제윤경
조승래 · 조용천 · 조정식
진선미 · 진 영 · 최운열
최인호 · 최재성 · 추미애
표창원 · 한정애 · 홍영표
홍의락 · 홍익표 · 황 희
의원(12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러한 이유에서

법 적용을 받는 초·중·고등학교와 비교할 때 급식품질 및 관리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임. 현행 「유아교육법」 제17조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이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유치원도 실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법 미흡으로 인한 유아의 부실급식 논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15조제1항).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를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p> <p><u><신 설></u></p> <p>1. ~ 3. (생 략)</p> <p>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p>	<p>제4조(학교급식 대상) ----- ----- ----- ----- ----- -.</p> <p>1. 「<u>유아교육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p> <p>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p> <p>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 ----- ----- 「<u>유아교육법</u>」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 운영위원회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 ----- ----- ----- -----</p>

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② · ③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